

15년 경찰채용 3차 문제 및 해설

1. 정답 ④

- ㉠ (O) 대판 2012.1.27, 2010도8336
- ㉡ (O) 홍삼절편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가공한 지역의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하는 것도 법령상 허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인삼류는 농산물 품질관리법에서 명칭·품질 등이 본질적으로 국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농산물로는 취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형법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국내 특정 지역의 수삼과 다른 지역의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특정 지역에서 제조한 홍삼절편의 제품명이나 제조·판매자명에 특정 지역의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2015.04.09, 2014도14191)
- ㉢ (O) [1] 도로교통법 제43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2]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1.8.25, 2011도7725).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O) 대판 2007.6.14, 2007도2162

2. 정답 ②

- ① (O) 대판 1996.5.10, 96도529
- ② (X) 피고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성 甲의 임신 사실을 알고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하였다가 거부하자, 甲에게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이후에도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낙태할 병원을 물색해 주기도 하였는데, 그 후 甲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시술을 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은 甲에게 직접 낙태를 권유할 당시뿐만 아니라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라고 통보한 이후에도 계속 낙태를 교사하였고, 甲은 이로 인하여 낙태를 결의·실행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甲이 당초 아이를 낳을 것처럼 말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낙태교사행위와 甲의 낙태결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낙태교사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판 2013.9.12, 2012도2744)
- ③ (O) 대판 2000.2.11, 99도5286
- ④ (O) 대판 2014.07.24, 2014도6206

3. 정답 ③

- ① (O) 대판 2005.9.9, 2005도3108
- ② (O) 대판 2007.9.20, 2006도294
- ③ (X)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협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2.7.28, 92도999).
- ④ (O) 대판 2010.2.11, 2009도9807

4. 정답 ②

- ① (O)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위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대판 2001.10.25, 99도4837 전원합의체).
- ② (X) 쟁의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로서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만일 부당한 요구사항을 뺏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4.11.13, 2011도393 ; 동지대판 2002.2.26, 99도5380)
- ③ (O) 대판 2007.4.27, 2006도7634
- ④ (O) 대판 1996.4.9, 96도241

5. 정답 ③

- ㉠ (정당한 이유 X) 부동산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경우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5.5.27, 2004도62).
- ㉡ (정당한 이유 X) 유선비디오 방송업자들의 질의에 대하여 체신부장관이 유선비디오 방송은 자가통신설비로 볼 수 없어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하더라도 그 견해가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같은 사업자들이 유선비디오 방송시설을 허가대상이 되는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아닌 것으로 알고 그 사업을 계속하였는데도 당국이 이를 단속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사건 행위가 범죄가 안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렇게 오인한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판 1989.2.14, 87도1860). [11 경찰채용]
- ㉢ (정당한 이유 O) 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자신의 비디오물감상실에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가 관련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었던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대판 2002.5.17, 2001도4077).
- ㉣ (정당한 이유 X) 중국 국적 선박을 구입한 피고인이 A은행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매도인인 중국 해운회사에 선박을 임대하여 반기로 한 용선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박 매매대금과 상계함으로써 구 외국환거래법에 위반한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1.7.14, 2011도2136)

6. 정답 ②

- ※ 미수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 : 체포·감금죄, 퇴거불응죄, 공무상보관물무효죄(㉠㉡㉢)
- [1] 재산죄는 원칙적으로 미수를 처벌하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부당이득죄, 경계침범죄, 장물죄, 강제집행면탈죄, 권리행사방해죄 등은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
- [2] 주거에 관한 죄(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등)는 모두 미수처벌규정이 있다. (㉠)
- [3] OO무효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7. 정답 ㉓

- ① (O) 대판 2008.3.27, 2008도89
- ② (O) 대판 1991.1.15, 90도2257
- ③ (X) 공동정범은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죄를 공동실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행위자 상호간에 있어야 하며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대판 1985.5.14, 84도2118). ※ 판례는 편면적 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않는다.
- ④ (O) 대판 2008.3.13, 2007도10804

8. 정답 ㉒

- ㉑ (불가벌적 사후행위 O) A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 B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A회사 명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B이 피고인의 동의하에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A회사 자금을 전액 인출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예금인출동의행위는 이미 배임행위로서 이루어진 질권설정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배임죄와 별도로 횡령죄까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2.11.29, 2012도10980)
- ㉒ (불가벌적 사후행위 X) 피해자 B중증으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이던 피고인 A이 C에게 대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B중증의 승낙없이 위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후 다시 B중증의 승낙없이 D에게 위 토지를 매도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토지를 매도한 행위는 선행 근저당권설정행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을 배척하고 위 토지 매도행위가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판 2013.2.21,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 ㉓ (불가벌적 사후행위 O)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즉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이를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됨에 그칠 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1983.4.26, 82도3079)
- ㉔ (불가벌적 사후행위 X)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경우, 영업비밀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사안에서, 절도죄와 별도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대판 2008.9.11, 2008도5364).

9. 정답 ㉓

- ① (O) 대판 1992.7.28, 92도700
- ② (O) 대판 1991.5.28, 91도352
- ③ (X) 히로뿡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에는 수수한 히로뿡의 가액만을 추정할 수 있고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정할 수 없다(대판 2000.9.8, 2000도546).
- ④ (O) 제357조 제3항 참고

10. 정답 ④

- ① (O) 대판 1998.5.26, 98도1036
- ② (O) 대판 1991.8.13, 91도1184
- ③ (O) 대판 2008.1.31, 2007도8011
- ④ (X)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95조의2). ※ 임의적 감경사유이다

11. 정답 ①

- ① (X)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등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 그의 모(母) 甲과 대화하던 중 甲의 이웃 乙 및 피고인의 일행 丙 등이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 알아보니 피해자에게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丙과 함께 피해자의 병문안을 가서 피고인·甲·乙·丙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건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위 발언을 한 것이라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없고, 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할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1.9.8, 2010도7497).
- ② (O) 대판 2014.03.27, 2011도15631
- ③ (O) 대판 2008.7.10, 2008도1433
- ④ (O) 대판 2009.9.24, 2009도6687

12. 정답 ①

- ㉠ (X) [1]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는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주간에’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피고인들이 특수절도미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이유로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판 2009.12.24, 2009도9667).
- ㉡ (X) 상사와의 의견 충돌 끝에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한 다음 평소 피고인이 전적으로 보관·관리해 오던 이른바 비자금 관계 서류 및 금품이 든 가방을 들고 나온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서류 및 금품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던 물건이라고도 볼 수 없다(대판 1995.9.5, 94도3033)
- ㉢ (X)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대판 1980.11.11, 80도131).
- ㉣ (O) 대판 2008.6.12, 2008도2440

13. 정답 ③

- ① (O) 대판 2007.9.20, 2007도5507
- ② (O) 대판 2001.7.13, 2001도1289
- ③ (X) [1]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해당 신청을 한 때에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2]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

청을 한 시점에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대판 2015.02.12, 2014도10086)

- ④ (O)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액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게 되는 결과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채권액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대판 2012.11.15, 2012도9603).

14. 정답 ④

- ① (O) 대판 2007.10.12, 2005도7112
- ② (O) 대판 2012.11.29, 2011도7361 ※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나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③ (O) 대판 2000.4.11, 2000도565
- ④ (X) 상법상 주식은 자본구성의 단위 또는 주주의 지위(株主權)를 의미하고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 주권(株券)과는 구분이 되는바,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판 2005.2.18, 2002도2822).

15. 정답 ③

- ① (O)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1.1.20,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 판례는 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배임죄를 부정한다.
- ② (O) 대판 2002.6.14, 2001도3534
- ③ (X)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계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4.08.21, 2014도3363 전원합의체)
- ④ (O)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구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으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실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8.6.19, 2006도4876 전원합의체).

16. 정답 ①

- ① (X) 甲이 회사 자금으로 乙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라 횡령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장물에 해당한다(대판 2004.12.9, 2004도5904).
- ② (O) 대판 2000.3.10, 98도2579
- ③ (O) 대판 1986.1.21, 85도2472
- ④ (O) 대판 2004.12.9, 2004도5904

17. 정답 ②

- ① (O) 대판 2002.5.17, 2001도6170
- ② (X) 경찰관인 피고인이 벌금미납자로 지명수배되어 있던 甲을 세 차례에 걸쳐 만나고도 그를 검거하여 검찰청에 신병을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내용으로 예비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을 위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집행장을 집행하는 경우 벌금미납자 검거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재판의 집행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甲에 대하여 실제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않은 채 공소 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1.9.8, 2009도13371).

- ③ (O) 대판 2014.04.10, 2013도229
- ④ (O) 대판 2008.2.14, 2005도4202

18. 정답 ㉔

- ㉑ (O) 대판 2005.7.15, 2003도6934
- ㉒ (X)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은 사실증명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원본이라고 볼 수 없다.
[2]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의 사진란에 본인의 사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여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든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이 공정증서원본임을 전제로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0.6.10, 2010도1125).
- ㉓ (X) [1] 민사조정법상 조정절차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그 성질상 허위신고에 의해 부실한 사실이 그대로 기재될 수 있는 공문서로 볼 수 없어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법원에 허위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판사로 하여금 조정조서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든 취지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조정조서가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0.6.10, 2010도3232).
- ㉔ (O) 권리의무에 변동을 주는 효력이 없는 토지대장은 공정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88.5.24, 87도2696)
- ㉕ (X)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부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쳤더라도 그것이 권리의 실제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면 공정증서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84.12.11, 84도2285)
- ㉖ (X) 중중 소유의 부동산은 중중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거래 상대방으로서는 부동산등기부상에 표시된 중중 대표자를 신뢰하고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중 대표자의 기재는 당해 부동산의 처분권한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의 기재로서 이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허위로 등재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대상이 되는 불실의 기재에 해당한다(대판 2006.1.13, 2005도4790)

19. 정답 ㉑

- ① (O)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인 피고인이 관할 행정청에 주기적으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가장납입에 의하여 발급받은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신고는 행정청의 단순한 접수나 형식적 심사를 거친 수리 외에 신고에 대응한 어떠한 적극적·실질적 행정작용에 나아갈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행정청이 신고내용의 진실성이나 첨부자료의 취지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아 추가 조사를 통한 적정한 관리감독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이를 신고인의 위계에 의한 방해의 결과로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1.8.25, 2010도7033).
- ② (O) 대판 2002.9.4, 2002도2064

- ③ (O) 대판 2003.12.26, 2001도6349
- ④ (X)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로 인하여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로써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96.10.11, 96도312).

20. 정답 ④

- ① (O) 대판 1990.2.23, 89도1212
- ② (O) 대판 2012.12.13, 2010도14360
- ③ (O) 대판 2007.3.15, 2006도9453
- ④ (X) [1]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사립대학교 교수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해자들은 사립학교 교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무고죄의 '징계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4.07.24, 2014도6377)